

제 1332 호

1986.12.1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엄 보 현
편집인: 공 보 관 김 승 권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제	모도재정	공보국장	공보관	공	보
1332	1986.12.16	김승권	김승권	1332	1986.12.16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2118 호 :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3
제 2119 호 :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3
제 2120 호 :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설치조례	4
제 2121 호 : 서울특별시소방시설지조례중개정조례	5
제 2122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5
제 2123 호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제 2124 호 :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수투징수조례중개정조례	6

(이면계속)

공									
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규 칙	
제 2152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7
제 2153 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7
제 2154 호 : 서울특별시북동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8
◎ 시 교육 위원 회 규 칙	
제 306 호 :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8
제 307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중 개정 규칙	9
◎ 고 시	
제 898 호 : 공원시설위탁관리(연장)허가	9
◎ 구 고 시	
도봉구제 530 호 : 하천정용(가스판매설)허가	10
◎ 공 고	
제 691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및상·하수도)실시계획공람	11
제 693 호 : 도시공원시설위탁관리계속허가	13
제 696 호 : 도시공원시설(정구장)관리위탁	14
제 698 호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14
제 702 호 : 도시계획(안)공람	19
제 703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	20
제 704 호 :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허가에 따른공람	21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18 호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동조직) 제 1항중 "(용산구와 동작구에 한한다)"를 "(용산, 동작, 은평, 마포, 관악, 강남구에 한한다)"로 하며

(별표 1) 공무원 정원표중 7급정원 "491"을 "588"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491"을 "588"로 하며, 고용직정원 "550"을 "9,695"로 하고 정원내용중 조사원 "91"을 "453"으로 하며, 합계란정원 "9,241"을 "9,69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86.12.1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19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지방공무원정원표가, 일반회계 8급 정원내용중 행정직 "13"을 "12"로 하고 "사서직 1"을 신설하며,

(별표 1-2) 경찰국 지방공무원정원표로 변경직정원 "46"을 "51"로 하고 정원내용중 7급상당 "11"을 "12"로 하고 팔호안의 전신처리관 "1"을 "1"로 하며) 9급상당 "22"를 "26"으로 하고 팔호안의 전신처리사 "3"을 "7"로 하며, 고용직원 "558"을 "597"로 하고 정원내용중 조사직 "189"을 "194"로 감시원 "1"을 "5"로 감무원 "17"을 "41"로 기계국 "33"을 "34"로 고용순시원 "214"을 "215"로 하고 합계란 정원 "653"을 "667"로 한다. (별표 2) 구청 지방공무원 정원

가. 일반회계중 기능직정원 "119"를 "120"으로 하고 정원내용증 7등급의 전기장 "67"을 "68"로 하며, 고용직정원 "1,930"을 "1,933"으로 하고 정원내용증 천공 "277"을 "280"으로 하며 합계관정원 "8,173"을 "8,17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20 호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청와대 소방대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 1 조 (설치목적) 이 조례는 대명동에 대한 경호 업무수행과 보유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속 아래 청와대 소방대(이하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 2 조 (위치) 소방대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 3 조 (대장) ①소방대에는 대장 1인을 두고, 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대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공무원의 정원) 소방대에는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하부조직) ①대장 밑에 부대장 1명씩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②부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대장 부재중 업무대행
- 2. 행정업무의 조정
- 3. 교육훈련 진담
- 4. 기타 필요한 업무수행

③제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대장, 부대장 부재중 업무대행
- 2. 경내 화재예방 업무수행
- 3. 화재진압 업무
- 4. 직원교양 및 감독
- 5. 소방장비 유지관리
- 6. 기타 소방대 운영에 관한사항

제 5 조 (시행규칙) 소방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와대소방대정원표

계급별	정원	정원내용
소방령	1	
소방경	1	
소방위	5	
소방장	3	
소방교	9	
소방사	11	
합 계	30명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21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중 소방직정원 "2,400"을 "2,371"로 하고 정원내용중 소방경 "61"을 "60"으로 소방위 "82"를 "77"로 소방장 "241"를 "238"로 소방교 "470"을 "467"로 소방사 "1,510"을 "1,493"으로 하며 합계란 정원 "2,538"을 "2,50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22 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설치목적)중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하여"를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로 하고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5급정원 "13"을 "14"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4"를 "5"로 하며, 6급정원 "43"을 "44"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4"를 "5"로 하며, 7급정원 "27"을 "29"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0"을 "12"로 하며, 8급정원 "6"을 "8"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5"를 "7"로 하며, 9급정원 "2"를 "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를 "3"으로 하며, 9급외급란 다음에 별정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별 정 직	2	7급상당 2 (전산처리사 1, 프로그래머 1)
<p>합계란 정원 "107"을 "116"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2.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근</p> <p>◎ 서울특별시조례제 2123 호</p> <p>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중 "교육연수 및 현장지도"를 "현장지도 및 교직원과 교육지원 인사에 대한 연수로써"로 한다.</p> <p>제 4 조 및 제 7 조중 "교원연수부"를 각각 "교육연수부"로 한다.</p> <p>제 7 조 제 1 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2. 일반직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인사 연수에 관한 사항 		
<p>제 7 조 제 2 항중 "초등교원연수실, 중등교원연수실"을 "연수기획실, 연수진행실"로 한다.</p> <p>제 10 조 제 2 항중 "전산실"을 "전산교육연구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2.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근</p> <p>◎ 서울특별시조례제 2124 호</p> <p>서울특별시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별표 1) 중 고시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 시 료	2,700 원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12. 15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제 2152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9 조 (소방행정과) 제 2항 "아"目中 "소방훈련장"을 "소방학교"로 하고

제 80 조 (방호과) 제 2항중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청와대 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12. 15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53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방관 과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한 구역표중 종로소방서중 "청와대 소방관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옥동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12. 15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 서울특별시규칙제 2154 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중 “관리 1계 및 관리 2계”를 “분양제, 임대제 및 재산관리제”로 하고 동조 제 2항 제 1호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 예산관리

제 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 자금수급계획 및 재원조달 “제 3호” 및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제 3호” “제 4호” 및 “제 5호”로 한다.

3. 분 양 제

가. 분양아파트 공급 및 관리

나. 분양아파트 단지내 상가, 복리시설 분양 및 관리

다. 국민주택용자금 관리 및 세입총괄

4. 임 대 제

가. 임대아파트 공급 및 관리

나. 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 복리시설 분양 및 관리

다. 기타 단지관리

5. 재산관리제

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보상나. 토지매각

다. 토지 및 공급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라. 기타 재산의 취득, 양여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12.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근

◎ 교육규칙제 306 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입체육특기자선발종목

남, 여별	종목
남 자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풋볼, 싸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요트, 카누, 근대 5종, 국궁, 로올러스케이팅, 보물링, 골프 (37종목)
여 자	육상, 수영,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조정, 승마, 빙상, 스키, 구름, 싸이클, 유도, 요트, 태권도, 근대 5종, 카누, 국궁, 로올러스케이팅, 보물링, 골프 (29종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12.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열근

◎교육규칙제 307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 2호중 "장관 (장관급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중

앙행정기관의 청장 (차관을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 7조 제 목중 "의결"을 "의결"으로 하며.

제 8조중 "징계혐의자를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98 호

공원시설위탁관리 (연장) 허가

1. 성동구 용담동 128-3 (군자공원) 에

대하여 도시공원 위탁관리(연장) 허가를 법 제6조 1,2,3항에 의거 공원시설 위탁관리(연장)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2.16

서울특별시

가. 위치: 성동구용담동 128-3
나. 수허가자: 강남구 반포 2동 한신 1차아파트 5동 103호 이 옥희
다. 관리기간: 1987. 1. 1 - 1987.12.31

라. 관리규모

면적 10.05㎡
토지 10.05㎡

마. 용도: 매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전화 445-9220)으로 문의바람.

구 고 시

◎도봉구 고시제 530 호

하천점용(가스관매설)허가

하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관한 위임조례 제 5조에 의거 고시한다.

1986.12.16

도봉구청장

허가일자	위 치	공사목적	허 가 내 용	피 허 가 자
86.12.15	도봉구 창동 754부터 방학동 727-13	가스관매설	1. 공작물 내역 φ 300㎜ 가스관 L = 20 m (0.48m × 0.48m 콘크리트보강) 2. 점용기간 '86.12.15 - '91.12.15	한일개발유식회사 (대표이사: 진장수)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69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상,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시고 제 105, 159 호(83. 3.19)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도시계획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 일간 공람토록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이해관계
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
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능
한다.

1986.12.16

서울특별시

- 공 랑 개 요 -

1) 사업의 시행지: 서대문구 홍은동
8의 558-372 간(소로 3류)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도로확장
및 상하수도시설

3)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B=5m L=154m

상수도-D=100% L=160m

하수도-D=600% L=160m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5) 사업기간: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87.12.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과
소재지, 지번, 지목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별첨

나. 보상시기: '86.12-'86.6

다. 보상절차

· 삼정평가금액에 의하여 협의
계약 체결후 취득

· 협의불응시 토기수용법 제 25조
2항 및 동법 제 77조에 의
거 강제수용

· 건물-계약후 70% 철거완료후
전액지급

토 지 수 용 현 황

지 번	구 분	총면적	수용면적	소 유 자
홍은동 8-558	대	109㎡	42㎡	강동구천호동 317-31 신장기
" 8-559	"	179	74	홍은동 8-559 정현창
" 8-560	"	152	61	" 8-560 양재승
" 8-332	"	103	53	" 8-332 양주을

지번	구분	총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홍은동 8-334	대	66	12	성동구금호동 4가 59호 정치호
" 8-333	"	46	46	"
" 8-335	"	63	25	홍은동 8-335 송금섭
" 8-336	"	86	69	홍은동 8-336 박명철
" 8-338	"	99	29	홍은동 8-338 이충규
" 8-339	"	69	9	은경부역촌동 28-32 박상근
" 8-340	"	112	37	홍은동 8-340 남궁성 외 4 인
" 8-368	"	241	30	서울시
" 8-369	"	112	17	홍은동 8-378 송주섭
" 8-370	"	116	17	홍은동 8-370 황정섭
" 8-376	"	112	7	홍은동 8-376 이철규
" 8-378	"	89	24	홍은동 8-378 함경만
" 8-379	"	102	38	홍은동 8-379 황수구
" 8-409	"	112	23	도봉구미아동 305-6 김중식
" 8-410	"	139	8	홍은동 8-410 김호덕
" 8-883	"	17	12	서울시
" 8-768	"	89	42	홍은동 8-768 강정원
" 8-413	"	145	54	홍은동 8-413 김상범
" 8-414	"	188	12	홍은동 8-414 박경희
" 8-417	"	162	3	서울시
" 8-557	"	26	2	홍은동 8-557 조재숙 외 5 인
" 9-428	"	83	10	홍은동 8-428 최명현

건 물 수 용 현 황

지 번	용 도 및 구 조	층 수	총 면적	수용면적	소 용 차
홍은동 8-558	목조, 세멘와즙	1	52.60	15.7	강동구천호동 317-31 신창기
8-559	연와조, 세멘와즙	1	91.80	38.7	홍은동 8-559 정현창
8-560	목조, 세멘기와	1	68.50	28.0	홍은동 8-560 양재승
8-335	목조, 세멘와즙	2	42.57	9.4	홍은동 8-335 송금섭
8-336	목조, 세멘와즙	1	23.21	3.4	홍은동 8-336 박명철
8-338	세멘브릭, 세멘와즙	1	30.12	25.9	홍은동 8-338 이충규
8-339	세멘브릭, 세멘와즙	1	37.74	2.2	홍은동 8-339 박상근
8-340	세멘브릭, 세멘와즙	1	43.44	15.8	홍은동 8-340 남궁성 외 4인
8-370	세멘브릭, 세멘기와	1	59.36	8.8	홍은동 8-370 장경섭
8-376	세멘브릭, 세멘와즙	1	40.10	4.3	홍은동 8-376 이철규
8-379	세멘브릭, 세멘기와	1	36.40	27.5	홍은동 8-379 황승규
8-409	세멘브릭, 세멘기와	1	22.08	6.6	홍은동 8-409 김종식
8-410	세멘브릭, 세멘기와	1	10.03	3.9	홍은동 8-410 김호덕
8-410	세멘브릭, 세멘기와	1	55.46	2.0	홍은동 8-410 김호덕
8-768	연와조, 세멘기와즙	1	48.99	8.7	홍은동 8-768 이은덕
8-413	세멘브릭, 세멘기와	1	47.36	3	홍은동 8-413 김상범
8-413	세멘브릭, 스킨트	1	8.48	8.48	
8-413	세멘브릭, 세멘와즙	1	41.32	1.1	홍은동 8-413 박준영

서울특별시공고 제 693 호

도시공원시설 위탁관리 계속허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62-10 낙성대공원 매점의 위탁관리 계속허가권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제 2 항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제 6 조 3 항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6. 12. 16

서울특별시장

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62-10 낙성대공원

나. 위탁관리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62-10 경이도

다. 위탁사항: 매점 1동 (대지 65평, 전경 44.64평)

라. 관리기간: 1987.1.1 ~ 1987.12.31 (1년간)

◎서울특별시공고 제 696 호

도시공원시설(정구장)관리위탁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71 호('83. 2.5)로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설치) 시행 완료된 도시공원시설(정구장)을 도시공원법 제 6 조제 2 항에 의거 관리 위탁하였기 동법 제 6 조제 3 항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

1986.12.16

서울특별시장

가. 위탁위치: 강남구 반포동 114-3 (반포공원내)

나. 위탁종류 및 명칭: 도시공원시설(정구장)관리위탁

다. 수탁자: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아파트 606 호 배구섭

라. 위탁기간: 87.1.1 ~ 89.12.31

마. 위탁사항: 정구장 6 면 및 부대 시설 4,192 꺾, 관리실 1 동 64.44 꺾

◎서울특별시공고 제 698 호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12 호(86.9.22)로 신설된 동대문 소방서와 각구 건설부서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용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 7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등록하고 동 규칙 제 11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6.12.16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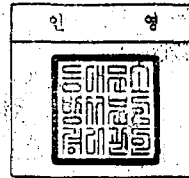
직인등록조서

의제명 일반회계

관서명 (국.청.소)

직명 동대문소방서 본입경리관인

사용개시일 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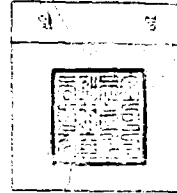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직 명 동대문소방서 분임기술원인

사용개시일 19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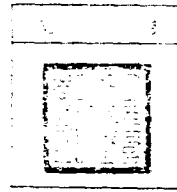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직 명 동대문소방서 물품관리관인

사용개시일 19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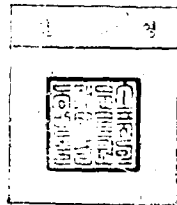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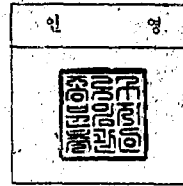
직 명 동대문소방서 물품관리원인

사용개시일 19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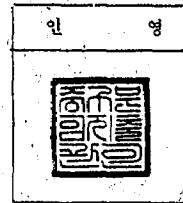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제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종로구
 직 명 종로구 분임지출관
 사용개시일 19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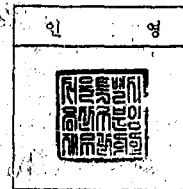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제 명 건설부소관 일반회계
 관 서 명 (청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직 명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지출관
 사용개시일 1986.12



직 인 등 록 조 서

회 제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직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사용개시일 19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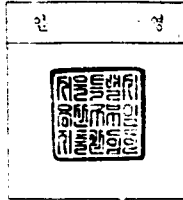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직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지출관

사용개시일 198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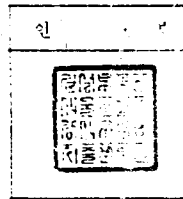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청소) 강서구청

직 명 건설부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분임지출관의 인

사용개시일 198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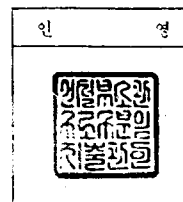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직 명 건설부소관 구로구 분임지출관

사용개시일 1986. 12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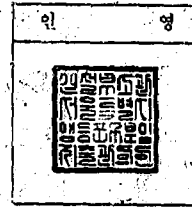
회 계 명 : 건설부소관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직 명 : 건설부소관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지출관

사용개시일 : '86.11.1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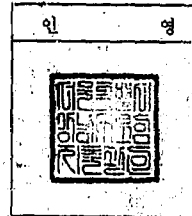
회 계 명 : 건설부소관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직 명 : 건설부소관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임지출관

사용개시일 : '86.11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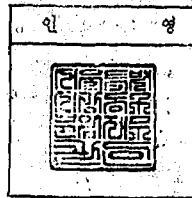
회 계 명 : 건설부소관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 명 : 건설부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사용개시일 : 분임사무관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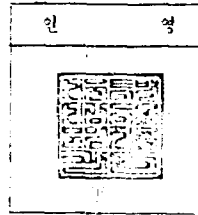
회 계 명: 건설부소관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 명: 건설부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사용개시일: 분임시달부터



◎서울특별시공고제 702 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릉동 598 의 23-683 의 24 간외 3 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

소에서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게 바란.
가. 공람기간: 1986년 12월 17일 ~ 12월 31일(14일간)
나. 공람장소: 도봉구청도시경비과

1986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도 시 계 획 안

시설명	구분	등급	유형	폭 원 (m)	연 장 (m)	지 점	종 류
도 로	폐 지	소 로	2	8	131	공릉동 598 의 23	공릉동 683 의 24
"	"	"	3	4	46	공릉동 610 의 12	공릉동 610 의 18
"	"	"	3	4	97	쌍문동 400 의 3	쌍문동 400 의 5
"	"	"	3	4	41	도봉동 622 의 69	도봉동 622 의 69

•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70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587 호('86.8.10)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홍대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25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조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 가. 공람장소: 마포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1986.12.16-1986.12.30 (14 일간)

1986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
 - 가. 사업장 위치: 마포구상수동 95 의 10-72 의 17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홍대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B=8, L=115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1986.12. -1987.5.25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 사.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 리 명 세
1	마포구상수동	1-7	학교용지	67	서울특별시	
2	"	1-8	"	383	"	
3	"	72-17	임 야	652	중구을지로 2 가 169	화원회전
4	"	72-19	"	128	"	
5	"	96-3	진	38	"	
6	"	95-37	대	36	마포구상수동 72-1	학교법인 홍익학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시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7	마포구상수동	95-38	대	25	마포구상수동 72-1 학교법인 홍익학원	
8	"	95-39	대	17	"	
9	"	95-40	대	148	"	
10	"	98-6	대	22	마포구상수동 72-1 학교법인 홍익학원	
11	"	139-8	구 거	14	서울특별시	

건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용도	면적	구 조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마포구상수동 95-15	주택	113.2	스케트기와브리	상수동 95-15 이종대	무려가
2	"	"	54.3	기와, 브린	" 김용진	"
3	"	"	90.5	기와, 브린	" 민경희	"
4	" 95-20	"	84.4	"	상수동 95-20 최부재	"

○ 서울특별시공고제 704 호

도시계획사업(시장) 변경허가에 따른
공 략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61 호(84.5.11) 및 같은 고시 제 573 호(86.8.11)로 시행허가 및 변경허가한 도시계획사업(시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일부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아오너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1986.12.1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구로구시흥동 966 번지 일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 서울중앙철도 종말상가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당초 성동구중곡동 120-25 최수영의 210 인 변경 성동구중곡동 120-25 최수영의 217 인 라. 사업시행규모 대지면적 : 35,864.2 ㎡ 건축면적 : 10,728 ㎡ 건축연면적 : 29,266.09 ㎡	마. 공람기간 : '86.12.17-'86.12.30 (14 일간) 바.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 856-4415) 사. 기 타 : 사업시행자의 일부변경 사항뿐으로 이하생략하며 관련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공람함.
---	--

사 령

◎ 1986년 12월 13 일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기관	훈련분야	파견기간	훈련비용
소방본부 소방학교	지 방 제진주 소방경	동경소방청 일본소방학교	소방분야	'86.12.19- 87.6.2 (5개월 15일)	국비부담

여 행 자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 비
소 속	직 급 성 명	여행국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기술심사담당 관할 건축지도과	지방공업기좌 지방토목기좌 지방농림기좌 지방기계기좌	김상용 이덕수 최광빈 이동윤	프랑스 스위스 일 본	열공급보급정책 및 쓰레기분리 수거현황파악	'86.12.17- 12.26 (10 일간)	에너지관리 공단부담

◎ 1986년 12월 16 일

여 행 자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 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여행국				
서대문 병원	방사선과장 (전문직 1등급) 김용배	미 국	의료진최신 기술연수	'86.12.17-12.30 (14 일간)	강남병원 부 담	